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	기관위원장
람	

제1380호 2018. 8. 27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-----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6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2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신청 공고 ----- 8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229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(안) ----- 13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13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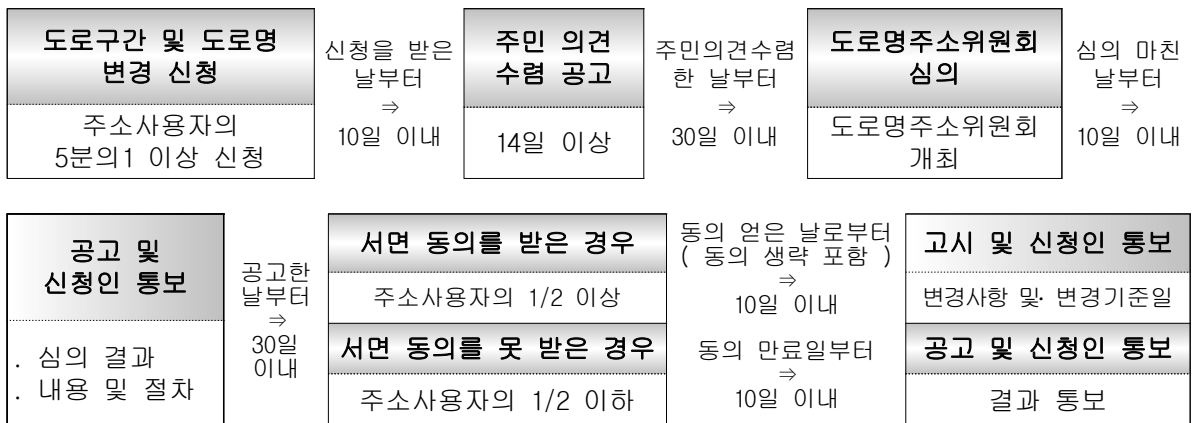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8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고 시 일 : 2018. 08. 27.
2. 고시방법 : 구보, 홈페이지
3. 고시내용 :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·변경에 관한 사항
(붙임 조서와 같음)
4.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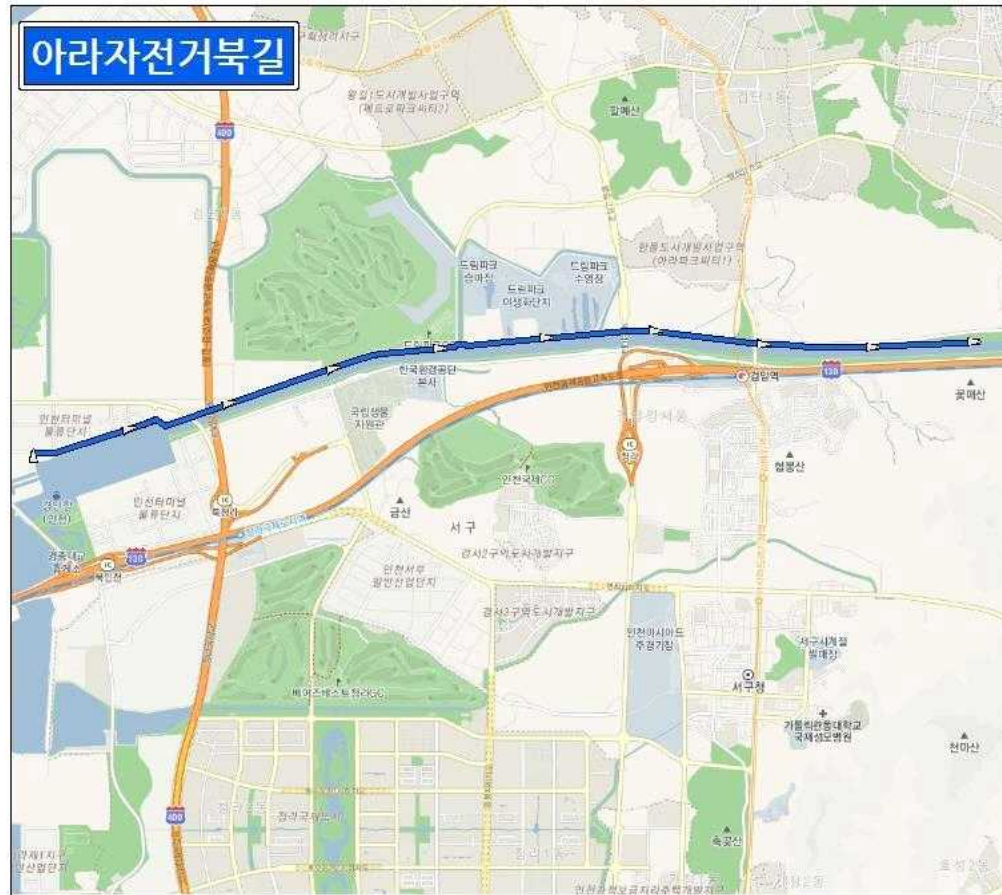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(☎032-560-483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 1부. 끝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부여 조서 및 도로구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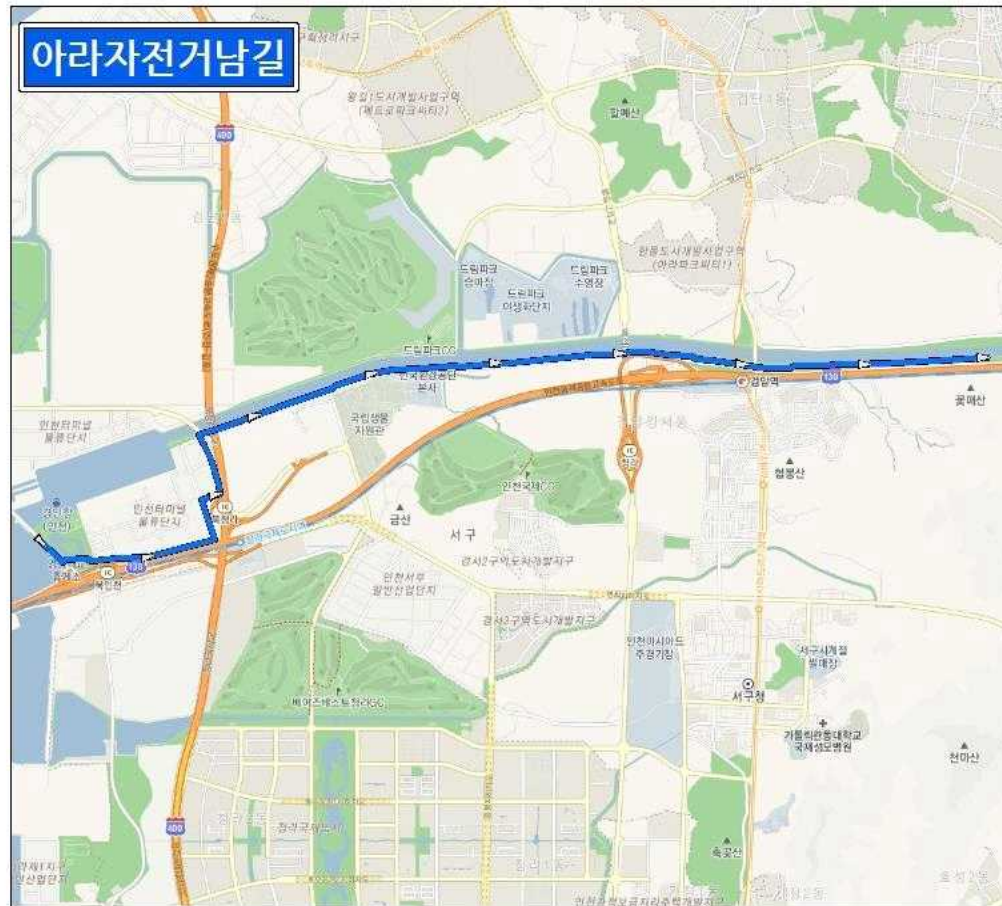
연번	도로 구분	도로명	기 점		종 점		제 원		기초간격 (m)	관할 행정구역	도로명 부여사유
			읍면동	지번	읍면동	지번	길이(m)	폭(m)			
1	길	아라자전거북길	오류동	1555	시천동	86-22	8,757	10	20	검암경서동	아라자전거길 북단에서 시작되는 자전거길
2	길	아라자전거남길	미등록토지		시천동	86-50	10,002	10	20	검암경서동	아라자전거길 남단에서 시작되는 자전거길
3	길	청서로16번길	청라동	8-167	청라동	8-166	420	20	20	청라3동	청서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

○ 아라자전거북길



아라자전거북길

○ 아라자전거남길



아라자전거남길

○ 청서로16번길

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114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8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북항로 76-18 외 1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08. 27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8-08-27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표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77-1	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76-18 (원창동)	20090922	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	
2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-111	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22 (청라동)	20101111	청라대로 동쪽에 위치	
3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41-1	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 24 (오류동)	20090922	오류동 내 오류역사를 경유하는 도로	
4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6-5	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2길 36 (원당동)	20081231	고산로 40번길에서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36-2	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40번2길 36-1 (원당동)	20081231	고산로 40번길에서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-216	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177번길 116 (원창동)	20090922	북항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-23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-41 (당하동)	20081231	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	
8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-24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-39 (당하동)	20081231	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	
9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58-33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608번안길 9-36 (당하동)	20081231	원당대로608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어있는도로	
10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2-3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9 (청라동)	20120330	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5-58	인천광역시 서구 푸른로7번길 7 (청라동)	20130730	푸른로 시작지점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12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1-3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내로174번길 18-12 (청라동)	20101111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13	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617-3	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110번길 7 (가정동)	20160701	봉오재3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1,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222호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신청 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약정기간이 2018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거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8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금고의 수 : 1개 금고(단수금고)
 - ※ 일반회계, 특별회계(세입세출외현금 포함), 기금을 모두 관리하는 금고
2. 약정기간 : 2019. 1. 1. ~ 2022. 12. 31. (4년)
3. 지정방법 : 일반공개경쟁
4. 금고의 주요업무
 -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
 - 세입세출외현금 등 각종 잡종금의 수납 및 지급
 - 일상경비 등 배정자금 및 유가증권,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
 -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등
5. 신청자격 :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으로 서구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
6. 지정 신청 절차

(1) 서류열람

- 열람기간 : 2018. 9. 3.(월) ~ 9. 7.(금) 근무시간 중(09:00~18:00)
- 장 소 : 서구청 세무1과 (본관 1층)
- 비치서류 : 2016, 2017년도 결산서 및 2017, 2018년도 예산서
- ※ 금고 지정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, 금고 지정신청 안내서로 같음

(2) 신청서(제안서) 접수

- 접수기간 : 2018. 9. 13.(목) ~ 9. 14.(금) 근무시간 중(09:00~18:00)
- 접수장소 : 서구청 세무1과 (본관 1층)
-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접수
- 제출서류 및 부수
 - 금고 지정 신청서, 법인 인감증명서·등기부등본·정관(사본), 각서, 사용인감확인서 각 1부.
 - 금고 지정 제안서 및 증빙서류 각 11부(원본 1부, 사본 10부)

7.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(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)

평 가 항 목	배 점	비 고
합 계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33	
2.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18	
3. 주민이용의 편의성	18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22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	9	

※ 세부항목 [별표] 참고

※ 평가세부항목 1-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중 「총자본비율」은 「BIS자기자본비율」을 말함

8. 심의·평가방법

-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하여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

비교, 심의·평가함.

- 서류심의를 원칙으로 하되,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심의를 병행할 수 있으며,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에서는 면접에 응하여야 함.
- 심의·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·제출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을 0점 처리 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.
-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, 적법한 범위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- 기타 심의·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.

9.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등

-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금융기관을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하고, 선정된 금융기관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함.
- 우선지정 대상은행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.
- 구금고 우선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임의로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동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우리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동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 지정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- 금고 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 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음.
- 금고로 지정되어 금고업무 상호 인계·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 예금에 대하여는 만기 도래한 후 인계·인수함
- 금고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9. 1. 1.

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, 2019. 1. 1.부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.

10. 비용부담

- 금고 지정 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및 선정된 후 약정 체결, 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,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 등은 금융기관 부담으로 함.

11. 기타사항

- 제안서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신청 안내서」에 따라 작성하며, 제안서 접수시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 및 세무1과 관계공무원이 제안서 및 증빙 서류 각 11부를 확인 후 밀봉할 예정으로,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(도장) 및 사용인감확인서 지참
-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또는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- 기타 문의 : 세무1과 세무행정팀 (☎ 032-560-4191)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1229호

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「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,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8. 8. 27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법리적 검토의견 적용 및 아동친화도시 기본원칙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관련조항 신설 등 일부개정으로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

2. 주요내용

-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목적, 정의 개정 (안 제1조, 제2조)
 - 법령명 삭제 및 『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』 정식 제명으로 변경
- 아동권리 교육·홍보 및 아동인권 구제 관련조항 신설 (안 제10조의2, 제10조의3)
- 어린이 참여위원회 체계적 운영지원을 관련조항 정비 (안 제15조~제18조)
 -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조례 별도 제정으로 본 조례에서 관련조항 삭제
 - 어린이 참여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관련조항 정비
-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관련조항 정비(안 제23조, 제26조)
 -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직제 변경, 정기회의를 연2회로 개정

3. 의견제출

-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: 아동친화정책관, 전화 560-5756, 팩스 560-274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-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법리적 검토의견 적용 및 아동친화 도시 기본원칙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관련조항 신설 등 일부개정조례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친화적 법체계 구축

2. 주요내용

- 법제처 검토의견 적용 아동친화도시 목적 및 정의 관련조항 정비
(안 제1조, 제2조)
- 아동권리 교육·홍보 및 아동인권 구제 관련조항 신설
(안 제10조의2, 제10조의3)
- 어린이 참여위원회의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조항 정비
(안 제15조~제18조)
 -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조례 별도 제정으로 본 조례에서 관련조항 삭제
 - 어린이 참여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기능 관련조항 개정
-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운영 관련조항 정비(안 제23조, 제26조)
 -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 및 간사 직제 변경 등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 산 수 반 사 항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“별지 참조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췌 : “별지 참조”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8-1229호

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 및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구성하는데”를 “아동친화도시로 구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항”을 “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”을 “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“아동권리란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 및 제5항과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”를 삭제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 중 “주요시책”을 “주요 시책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아동권리 교육·홍보)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, 아동보호자, 아동관계자, 공무원,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.

제10조의3(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) 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조치를 위하여 아동인권담당관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인권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아동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
2.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
3. 아동인권 관련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제도에 대한 건의
4.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연계 등

제11조 제목 “(아동 실태조사 실시)”를 “(아동친화도 조사 실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실태”를 “놀이와 여가, 참여와 시민권, 안전과 보호, 보건과 사회서비스, 교육환경, 가정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영향평가”를 “아동영향평가”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참여위원회”로 한다.

제15조 제목 “(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)”를 “(어린이 참여위원회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· 청소년 참여위원회(이하 “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”)”를 “참여위원회(이하 “어린이 참여위원회”)”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· 청소년 참여위원회”를 “참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“어린이·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”을 “아동 정책 의견제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“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”을 “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“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”를 신설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· 청소년 참여위원회”를 “참여위원회”로, “20명”을 “5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어린이로”를 “8세에서 13세까지 아동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· 청소년 참여위원회”를 “참여위원회”로, “아동친화도시담당”을 “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· 청소년 참여위원회”를 “참여위원회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· 청소년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”을 “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 “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구정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”를 신설한다.

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복지국장”을 “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“담당”을 각각 “아동 업무 담당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”을 “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4회”를 “2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 및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데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.</p>
<p>1. “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.</p>	<p>1. ----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 ----- -----.</p>
<p>2. “아동친화도시”란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으로 모든 면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.</p>	<p>2. -----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3. “아동권리”란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 및 제5항과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2.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
- 3. 4. (생략)

③ (생략)
<신설>

<신설>

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 주요시책
- 3.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2(아동권리 교육·홍보)

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, 아동보호자, 아동관계자, 공무원, 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아동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교육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.

제10조의3(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)

①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조치를 위

제11조(아동 실태조사 실시) ①
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
 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
 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
 수집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3조(아동영향평가 실시) ① 구
 청장은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
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
 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

하여 아동인권담당관을 둘 수
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동인권담당
 관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
 한다.

1. 아동인권 침해가 우려되는
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
2. 고충 민원의 조사결과에 따
 른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
3. 아동인권 관련 운영 개선이
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제
 도에 대한 건의
4. 전문적인 상담 및 지원이 필
 요한 경우 관련기관 연계 등

제11조(아동친화도 조사 실시) ①

 ----- 놀이와 여
 가, 참여와 시민권, 안전과 보
 호, 보건과 사회서비스, 교육환
 경, 가정환경 등 생활 전반에 대
 한 실태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아동영향평가 실시) ① --

 ----- 아동
 영향평가-----

거쳐 아동영향평가(이하"영향평가"라 한다)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

제15조(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 (이하 "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")를 둔다.

제16조(기능) 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언어로 논의한다.

1. 어린이 ·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예산
2.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사항

<신설>

제17조(구성) ① 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연령과 성숙도

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장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참여위원회

제15조(어린이 참여위원회 설치)

---- 참여위원회(이하 "어린이 참여위원회"-----

-----.

제16조(기능) -----참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아동 정책에 대한 의견제안
2.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개선 사항 제안
3. 아동 인권 옹호활동 참여

제17조(구성) ① ----- 참여위원회-----

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각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어린이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· 선정한다.

③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 ·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 · 선정한다.

④ 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아동친화도시담당이 된다.

⑤ 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 전문가를 배치한다.

제18조(위원 임기 및 해촉) ① 어린이 · 청소년 참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----- 50
명 -----.

② -----

----- 8세에서 13세까지 아동
으로 -----

-----.

<삭 제>

④ ----- 참여위원회-----

----- 아동친화도
시 업무 담당-----.

⑤ ----- 참여위원회-----

-----.

제18조(위원 임기 및 해촉) ① --
-- 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----

-----.

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~3. (생략)

<신설>

제23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^{으로}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(생략)

2. 인천서부경찰서 담당 부서장

3.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장

4. ~ 7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1.~3. (현행과 같음)

4.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 및 구정참여활동에 3회 이상 불참할 경우

제23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아동 업무 담당 --

3. ----- 아동 업무 담당 --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-----
--.

<p>제26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연 4 회로 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26조(회의) ① ----- 2회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